

예 산 총 칙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93,436,897 | 14,803,107 |
| 일반회계 | 464,638,121 | 13,939,144 |
| 특별회계 | 28,798,776 | 863,963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7,324,577 | 519,737 |
|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7,324,577 | 519,737 |
| 기타특별회계 | 11,474,199 | 344,226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83,713 | 20,511 |
|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1,262,014 | 37,86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1,176,532 | 35,296 |
|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| 483,382 | 14,501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7,868,558 | 236,057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 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 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7,471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 포함)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